

---

#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

---

2021. 2. 24.



## 차 례

I. 현황 및 조치상황 .....	1
II. 문제점 및 한계 .....	3
III. 방향 및 전략 .....	4
IV. 세부 계획 .....	4
1.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.....	4
2.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 .....	6
3.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.....	9

# I. 현황 및 조치상황

○ **(발단 및 경과)**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, 당사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**체육 현장에서 성적지상주의와 인권경시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** 대두

\* 유명 스포츠 선수가 학생(선수)들의 롤모델이 되는 등 **큰 사회적 책임을** 갖고 있고,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재 여론 크게 확산

-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**소속 팀, 단체별 출전 정지, 국가대표 자격 박탈** 등 제재 조치

☞ 그러나, 이후에도 유사 사례 폭로가 잇따르며, 스포츠 선수의 **과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처리방향 제시 및 향후 체육 현장에서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** 긴급요

○ **(그간의 조치)** '19년 병상계 성폭행, '20년 철인3종 인권침해 등 체육계 중대 비리 사건을 계기로 **스포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**

※ ▲ 체육계 (성)폭력 등 비리 근절대책('19.1.25) ▲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('20.8.28) ▲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('20.12.11) 既 발표

- '19년 성적지상주의 중심 스포츠 기본틀 변화를 위한 **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, 총 7차례 권고** 제시

\* ▲1차 스포츠 인권기구 설립 ▲2차 학교스포츠 정상화 ▲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▲4차 스포츠기본법 제정 ▲5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▲6차 전문체육 시스템 개선 ▲7차 체육단체 선진화

- '20년 **스포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총 4차례 법률 개정**(국민체육진흥법 3회, 학교체육진흥법) 및 **'21년 본격 시행**

## < 스포츠 인권보호 법 개정 주요 내용 >

○ **국민체육진흥법** :

(1차개정) 스포츠윤리센터 설립, (성)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·자격제한 강화 등('20.8.5 시행)

(2차개정) 스포츠윤리센터 권한·기능 강화,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,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('21.2.19 시행)

(3차개정)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·보고,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('21.6.9 시행)

○ **학교체육진흥법** : CCTV 설치, 학기별 인권교육 의무화, 피해자 심리치료 등('21.4.21 시행)

-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**스포츠 인권 전담기구**(신고접수, 상담, 조사 등)인 **스포츠윤리센터 출범**('20.8.5)

\* 스포츠윤리센터 실적(~'21.2.22) : 상담 397건, 신고 123건, 처리 23건

○ **(학교폭력 실태 파악)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('20.7~8월 / 교육부)** 결과, 전체 학생선수(59,401명) 중 **680명(1.2%)이 피해 경험**

-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, 그 중 **310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**

### < 2020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조치 현황 >

구분	체육지도자(77명)				학생 학교폭력 전담 (심의)기구 조치	합계	
	학교 안(61명)		학교 밖(16명)				
	해임	징정계	형의 없음	아동학대 신고			
사례수(명)	5	9	33	14	16	233	310

## 학생선수 등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결과

□ **학생선수 (성)폭력 등 실태조사('19.11 발표) (\*인권위)**

- (조사 개요) 전국 초중고 선수 63,211명 조사, 총 57,557명 응답
- (조사 결과) 언어폭력 **15.7%**, 신체폭력 **14.7%**, 성폭력 **3.8%** 경험

□ **선수 및 지도자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('21.2.22~23) (\*문체부)**

- (조사 개요) 전국 3만여명 선수·지도자 조사, 선수(926명), 지도자(1,157명) 응답
- (조사 결과) 만 14세 이상 **학생선수** 최근 3년간 폭력경험 : 언어폭력 **9.6%**, 신체폭력 **7.6%**
  - \*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선수의 가해자 유형 : 지도자 68.3%, 선배선수 50.9%, 동료선수 13.0% 등
- 과거 대비 인권침해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비율 : 선수 **71.4%**, 지도자 **89.7%**
  - \* 선수 구분별 인권침해 '감소' 응답 비중 : 학생선수(14세 이상) 68.4%, 대학 71.8%, 실업팀 76.6%, 프로 79.5%
  - \* 선수의 감소 원인 인식 : 체육인 인권의식 향상 64.3%, 국민 인권의식 향상 43.6%, 신고문화 확대 37.1% 등

☞ 인권위 조사결과에 비해 폭력경험 비율 감소하고 과거 대비 인권침해 감소 인식도 긍정적이거나, 선수와 지도자간 인권침해 감소에 대한 인식차 有

## II. 문제점 및 한계

- **(성적지상주의 문화의 폐해)** 학교운동부, 실업팀 등 지도자는 실적 중심 평가(성적, 진학 등)를 받고 있어, 성적을 위해 폭력 등 인권 침해 용인·정당화 경향 여전
  - 선수의 경우도 상급학교 진학, 실력 향상 등을 위해 인권침해 감수 또는 내면화
    - \* 학생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후 “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”하는 비율 : 초등학생 38.7%, 중학생 21.4% (인권위 학생선수 실태조사, '19.11)
  - 경기실적 중심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로 인해 팀 내 실력있는 선수에게 권한과 지원이 집중되어, 선수간 서열화 및 왜곡된 관계(폭력, 따돌림 등) 조장
- **(폭력에 순응하게 하는 폐쇄적 구조)** 운동부 지도자, 동료 선수들과 합숙, 훈련 등 계속 같이 생활하고, 진학·취업(실업팀 등)을 위해 선후배 관계가 중요한 폐쇄적 구조로 폭력에 소극적 대처
  - \* 신체폭력 피해시 중학생 78.6%, 고등학생 80.8%가 소극적으로 대처(그냥 넘어감, 소심한 불만표시 등)(인권위 학생선수 실태조사, '19.11)
- **(엄중한 책임부과 미흡)** 학교폭력에도 향후 선수활동에 지장이 없는 미온적 처벌로 인해 재발 방지 및 예방효과 미약
  -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생선수에 대한 조치(사과, 봉사, 전학 등)는 대회 참가 제한 등 선수생활에 대한 제재와 연계 미비
    - \*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종목단체에 통보되지 않음
  - 과거에 있었던 폭력행위의 시효\* 완료 등으로 조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거나, 스포츠 선수의 중대한 학교폭력 이력이 드러나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미비
    - \* 대한체육회 징계시효 최대 5년, 폭행 공소시효 5~10년

## III. 방향 및 전략

<b>방향</b>	<b>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 제시</b> <b>촉진한 학교체육 폭력 거름망 구축과 근본적 인식 개선</b>	
<b>전략</b>	<b>(과거)</b> 유사 사건에, <b>피해자 중심 처리 체계 구축</b>	<b>추진 과제</b>
	<b>(현재)</b> 체육 현장에서, <b>학교폭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예방 및 제도 보완</b>	
	<b>(미래)</b> 폭력을 배제한, <b>성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 개선</b>	
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피해자의 치유·회복 지원</li> <li>② 과거사례 적극 대응</li> <li>③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</li> <li>④ 징계정보 통합관리 확대</li> <li>⑤ 선수 선발시 폭력이력 확인, 제한 강화</li> <li>⑥ 단체별 제재규정 점검 및 정비</li> <li>⑦ 학교현장 폭력실태 확인·점검 강화</li> <li>⑧ 피해자 2차 피해 방지</li> <li>⑨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</li> <li>⑩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</li> <li>⑪ 학교 현장의 인권의식 개선</li> <li>⑫ 과학적 훈련방식 확산</li> </ol>

## IV. 세부 계획

### 1 [기 발생사건 처리]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

◇ 진실규명,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, 피해자 동의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

#### □ 피해자의 치유·회복 지원

- **(피해자 상담)**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상담(심리, 법률 등) 지원 [피해자가 성인: 스포츠윤리센터, 학생: 교육부]
- **(진정한 사과를 통한 치유)**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폭 치유 및 회복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유도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[피해자가 성인: 스포츠윤리센터, 학생: 교육부]
  - \* 20년 지나도 생생한 그때의 고통... “진정한 사과 받고 싶어” (서울신문, '21.2.16)

## □ 과거사례 적극 대응

- **(집중신고기간 운영)**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선수(프로, 실업, 국가대표 등)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(3월~4월, 2달간) [스포츠윤리센터]
  - \* 전담신고창구 설치(홈페이지(모바일 포함), 전화) 및 홍보
- **(모니터링 강화)** 포털, 네이트판 등 모니터링 강화, 체육계 학폭 폭로 발생시 폭로자 접촉을 통한 신고 접수 [스포츠윤리센터]
  - \* 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직권조사 착수

## □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

- **(기준 마련)** 스포츠윤리센터 조사, 본인 인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에 대해 제반 상황\*과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영구 퇴출, 출장정지 등 구단, 협회 등의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[문체부]
  - \* 피해자 용서 여부, 죄질, 과거 학폭징계 여부 등
- 적절한 제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(문체부, 대한체육회, 스포츠윤리센터, 프로단체, 시민단체 등) 구성·운영

### 【 現 제재 기준(예시) 】

- **프로스포츠** : 포괄적 상벌규정\*에 따라 출장 정지 등 제재 조치
  - \* 예시) 범죄 등으로 물의 야기시 2~20경기 출장 정지(K리그),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품위 손상시 6개월 이상 자격정지(남자골프 등)
- **국가대표** : 회원종목단체, 시·도체육회 등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무기한 국가대표 선발 제한
- **실업팀** :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해임 등 징계 조치(팀별 운영규정)

- **(조사 및 제재)** 신고 사건 조사,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 종목별 단체에 제재 요구 [스포츠윤리센터]
  - 사건 처리기간(최대 120일) 준수 및 신고자에 처리 진행상황 중간 알림 확대(現 : 처리기간 연장시 통보 → 개선 : 수시 통보)
    - \* 현재 사건 처리기간 90일+30일(1회 연장가능)

## 2

## [재발 방지]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

◇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,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 강화

## □ 징계 정보 통합관리 확대

- **(징계정보 통합관리)** 통합징계정보 시스템 구축(~'22년)에 따라, 학교 운동부 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통합관리 추진 [스포츠윤리센터]
  - \*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별 징계이력 통합(~'21년), 학교운동부 징계이력 통합(~'22년)
  - 통합관리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\*는 관계 기관 협의체(문체부, 교육부, 스포츠윤리센터, 학교 등)를 통해 협의해 결정
    - \*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, 인권침해 등을 징계정보에 포함
- **(스포츠윤리센터 연계 확대)** 학생선수 관련 신고 정보를 학교와 스포츠윤리센터간 공유 방안\* 추진 [교육부, 스포츠윤리센터]
  - \* 학교에 운동부 내 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신고자에 고지 등

## □ 선수 선발 등 과정에서 폭력 이력 확인 및 제한 강화

- **(프로스포츠)** 신인 프로선수 선발시 서약서 징구(거짓 작성시 제재),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점검 [프로스포츠단체]
- **(국가대표)** 학교폭력 징계시 국가대표 선발 제한 [대한체육회]
  - \* 종목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시 징계이력 확인 및 학폭위 심의이력 제출 요구
- **(실업팀)** 신인선수 선발시 학폭 이력 확인·반영(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) 권고 [문체부]
- **(대학)** 대입 특기자전형시 고등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고 특기자 선발에 참고 [교육부]
  - 대학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'학교폭력' 사항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시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[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]

○ **(선수등록·대회참가) 가해학생 조치결과\* 사전확인을 통한 선수 등록·대회참가 제한** [대한체육회]

\*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사항 내역

- **선수등록 배제** : 학생선수 등록(매년 갱신)시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**퇴학처분을 받은 경우(고등학생에 한정\*) 선수등록 제한**

\*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인 학생은 퇴학 불가

- **경기대회 참가 제한** : **종목별·종합대회 주최·주관처에서 참가 선수의 학폭 이력을 확인하여 대회참가 제한**

\* 대회참가 신청서 제출시 학생부상 학교폭력 기록 학교장(학생선수와 경쟁하는 동일연령대 非재학 선수의 경우 최종 재적학교 학교장) 확인서 첨부

**【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(안) 】**

- 3개월 :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·보복금지), 3호(교내봉사)
- 6개월 :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
- 12개월 : 8호(전학)
- 영구 : 9호(퇴학) \* 퇴학시 선수자격 박탈

※ 가해학생 조치 병과시 중한 조치 적용, ※ '21년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시인부터 적용

□ **단체별 제재규정 점검 및 정비**

○ **(프로스포츠) 각 연맹의 포괄적 상벌규정 상 징계 사유에 학교 폭력을 예시로 명기\*** [프로스포츠단체]

\* 규정 상 징계 사유 :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→ 학교폭력, 인권침해,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○ **(국가대표) 대한체육회·종목단체별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점검하여 학교폭력, 인권침해시 선발제한 근거 명시** [대한체육회]

\* 국가대표 영구제명 요건 단축(폭력으로 인한 3년 이상 출전정지 → 1년 이상 출전정지), 학교폭력, 인권침해,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가 등

○ **(실업팀) 실업팀별 운영규정 제정시, 학교폭력, 인권침해 등이 드러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** [문체부]

\*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('21.6.9 시행)으로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및 지자체 보고 의무 부과

□ **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 확인·점검 강화**

○ **(전수조사) 매년 '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' 실시**(7월) [교육부]

\* 학생선수 개인별 조사로 가·피해자 특정 및 피해 확인시 조치 연계

○ **(현장 감시 강화) 학교현장 인권감시관(불시점검, 상담) 운영**(4월~), **지역사무소·학교운동부 연계 체계 구축**(하반기) [스포츠윤리센터]

- 학교체육시설 **CCTV 설치 확대**(개정 학교체육진흥법 '21.4.21 시행) [교육부]

□ **피해자 2차 피해 방지**

○ **(출전 지원)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(탈퇴, 전학 등), 소속팀이 없더라도 시·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출전 지원** [대한체육회]

○ **(임시 보호) 지속적 피해(합숙 등) 우려시 피해학생(現 운동부) 대상 긴급 임시보호(숙식 등) 지원** [스포츠윤리센터]

\* 상담, 신고, 조사과정에서 공간 분리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, 가족, 주변인 및 조력인에게 임시거소(숙박시설 등) 비용 지원

□ **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**

○ **(인력·조직 확대) 일선 학교운동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, 스포츠 윤리센터 인력 확충**('21년 +13명) 및 **지역사무소 설치**('21년 3개소) [스포츠윤리센터]

- 전문수사기관(검·경 등) 인력 파견, 스포츠 특사경 도입 추진

○ **(신고 편의성 제고) SNS(카카오톡 등) 활용 간편 신고체계 구축** ('21년) [스포츠윤리센터]

◇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, 학습·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대

□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

- **(평가체계 개선)** 팀 성적을 위해 실력있는 선수에 지원을 집중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, 개인별 평가가 가능한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 지표 개발(농구, 야구, 배구, 축구)(~'21년) [문체부, 교육부]

\* 축구의 경우 개인별 경기력 평가지표를 개발 중이며, 팀 실적증명서 대신 개인별 실적증명서 발급 추진('21년 : 고등리그, '23년 ~ : 전체 대회)

\* 대입 체육특기자 경기실적증명서 반영비율은 평균 약 57%(일괄전형 기준)('20년)

- 체육지도자 채용·평가시 성적(대회 성적, 상급학교 진학 등) 외 요소 반영 확대 [문체부, 교육부]

【 평가 요소(예시) 】

- **학교운동부 지도자** : 인권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, 학습권 보호 노력 등
  - \*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(~'21.4.21)
- **실업팀 지도자** : 지도능력, 선수간 의사소통 정도, 팀발전 기여도 등
  - \* 실업팀 운영개선 연구용역(~'21.1/4분기)

- **(운동과 학습 병행 환경 조성)** 현재 축구, 야구, 농구 종목에서 실시중인 유·청소년 주말리그\*를 他 종목까지 확대 [문체부]

\* 축구 749개팀, 야구 81개팀, 농구 118개팀 리그 참가('20년)

- 수요조사(3월) 및 공모를 거쳐, 종목별 실정에 맞는 리그 개최·지원체계 구축

- 종목단체별 주중 개최 대회도 주말로 점진적 전환(종목단체 신청시 보조금 지원, '21년 19억원)

-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시 성적 등 운동 외 요소 반영 확대\* 및 대회 참가, 특기자전형 등에서 최저학력기준 반영 확대\*\* [교육부]

\* 현행 30%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40% 이상으로 상향 조정

\*\*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참가가 제한되도록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추진(교육위 전체회의 통과, '21.2.19.)

□ 학교 현장의 인권의식 개선

- **(상시합숙 근절)** 초등학교 운동부 기숙사 폐지('19) 연계, 향후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\*도 감축 유도,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추진 [교육부]

\*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황 : ('19) 64개 → ('20) 22개

※ 고등학교는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제한적으로 운영 ('20년 174개교)하되, 연1회 이상 현장점검

- **(인권교육 강화)** 학생선수, 운동부 지도자 대상 학기별 1회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 실시 [교육부]

- 선수·지도자·학부모 등 의무적 인권교육 시간 확대(~'21년)\*, 체육지도자 인권 보수교육(2년 주기, 미이수시 제재/'21.6.9~)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·콘텐츠 개발(총 16종) [문체부, 스포츠윤리센터]

\* 선수·지도자·체육단체 임직원 등 : 1시간→3시간, 학부모 : 1시간(신규)

-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(필요성, 제재 등) 교육 실시 [프로스포츠단체]

□ 과학적 훈련방식 확산

- **(스포츠과학지원 확대)** 인권침해가 아닌, 과학적 훈련방식 도입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지원 [문체부]

-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(11개소)를 통해,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 운동부까지 지원하고, 센터간 지원 사례 공유를 통해 우수 훈련사례 확산

-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기준에 훈련의 선진화·과학화 등 요소를 추가(관련 연구용역 중, ~'21.上)하여 과학적 훈련 확산 유도

- 가상·증강현실을 이용한 국가대표 훈련 콘텐츠를 학교까지 확산

\* 가상현실을 이용한 종목 체험 콘텐츠를 제작해 종목 선택 등 활용('21년 100억)